

2022년 1월

NFT 관련 주요 현안 (4)

김·장 법률사무소의 핀테크·가상자산팀에서는 최근 부각되는 NFT와 관련된 제반이슈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편에서 다룬 바와 같이, NFT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NFT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의 2편 ‘지식재산권편’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관점에서 NFT의 거래 시 원저작물 혹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이하 “원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하는 효력을 갖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NFT 거래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양도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4편에서는 NFT의 세무상 주요 이슈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I. NFT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이슈¹

특정 NFT가 ①가상자산, ②투자계약증권 혹은 ③원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행 세법의 틀 안에서 각각의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². 다만 NFT의 경우 기초자산의 분류나 소유권·수익권 등의 결합 여부, fractional NFT 해당 여부 등에 따라 NFT 이전을 기초자산의

¹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NFT의 법적 성질과 무관하게 NFT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가 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경우 대체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² 본 뉴스레터의 분석은 특정 NFT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 혹은 원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하에서 현행 세법의 틀 안에서 세무이슈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NFT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법적 성격 및 세법에 따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NFT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 및 과세당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각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³ 예정입니다. 따라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NFT의 경우 다양한 양태가 존재하므로 모든 NFT를 일반화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다만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⁴.

만약 특정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거주자의 경우 2023.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비거주자의 경우, 2023.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거나 특정금융정보법에 정의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관·관리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⁵. 다만,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편에서 다룬 바와 같이 NFT는 그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6가지 유형 중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거주자의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³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기존 2022. 1. 1.에서 2023. 1. 1.로 1년 유예되었습니다.

⁴ 금융위원회 2021. 11. 23.자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 관련 보도설명자료 참조

⁵ 한편, 개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 관련 소득에 대해 2022년 이전에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과는 달리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적용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⁶.

또한, 개정 소득세법 조문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을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라면 해당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원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앞서 2편 '지식재산권편'에서 다뤄진 것처럼, 원저작물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NFT 거래라면 원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NFT 거래 시 원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거주자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그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NFT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원저작물 등으로 하여 민팅이 된 후 원작자가 이를 창작품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게 되면 이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저작자 이외의 자가 원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결합된 NFT를 양도하는 것 역시 기타소득 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예술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상기 자산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과세 여부에 대해선 조세조약의 내용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NFT의 양도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 저작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NFT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에는, NFT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원천설을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NFT 거래로 인한 손익이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

⁶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 억 원 이하분은 22%, 3 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한다고 명확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NFT의 과세문제에 대한 금융 및 과세 당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NFT 관련 거래 시 해당 NFT의 특성 및 계약조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세상 취급을 사전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II.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⁷을 한 바 있고, 국세청 또한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⁸.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때 재화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권리에 대해서는 물건 외에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범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권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⁹.

NFT의 경우를 살펴보면, NFT 자체가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수익권 분배 등과 결합되어 그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NFT가 저작권과 같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가 결합되어 존재하며,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NFT가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등 경제적 교환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NFT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NFT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NFT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NFT 관련 거래 시 NFT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및 과세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FT 관련 주요 현안

[NFT 관련 주요 현안 \(1\) - NFT의 법적 성격](#)

[NFT 관련 주요 현안 \(2\) - NFT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이슈와 환경](#)

[NFT 관련 주요 현안 \(3\) - NFT 등 블록체인 기반 게임 관련 법적 이슈](#)

⁷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2021. 3. 4

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두 65524 판결

담당 변호사

김준영

02-3703-1824
joonyoung.kim@kimchang.com

이정민

02-3703-1671
jungmin.lee@kimchang.com

김계정

02-3703-4550
gyejeong.kim@kimchang.com

박정일

02-3703-1040
jipark@kimchang.com

서지원

02-3703-1648
jiwon.suh@kimchang.com

유동관

02-3703-5966
dongkwan.ryu@kimchang.com